파주시 공고 제 2019 -972호

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3차 공고

파주시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【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-지역정착지원형】의 **참여기업**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3차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19년 6월 10일

파 주 시 장

1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(유형1)

> **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?**
>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지역기업에 채용하여 **청년에게 일자리와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**, **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**함으로써,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

나. 사업기간 : 2019.6.~12(※총 사업기간은 2년, 예산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)

다. 사업규모 : 청년 8명

라. 사업대상 : 참여청년(만18세 이상 ~ 39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한 기업

※ 사업지원기간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파주시 유지

마. 지원내역

- 청년에게 월 급여 200만원까지 보장하여야 하며 그 외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
- 4대 보험료, 수당(연장·야간·가산·휴일), 퇴직금은 기업에서 부담
- 4대보험 의무 가입
- 청년 1인 지원금 : 월 200만원

구분	지원금(1인)	부담비율	기타사항
예산(국·도·시비)	180만원	90%	지원금(시→기업)
참여기업(사회법인 등)	20만원	10%	임금(기업→청년)

* 기업체 별로 지원인원은 1명으로 한정. 2명이상 지원 불가함.

바. 참여자별 역할

파주시	기업 및 수행기관	청년
- 참여청년 공고·모집 - 청년 직무교육, 컨설팅 지원 등 - 인건비 지급(시→기업) - 근무실태 점검(시→기업)	- 청년 면접 후 채용 - 시 운영 교육 등 채용청년 참여 협조 - 채용청년 근태(복무)관리 **- 2년 후 취업 연계** - 인건비 지급(기업→청년) - 국고보조 프로그램(e-나라도움) 운영(급여, 정산 등)	- 참여기업 면접 등 참여 - 채용 후 기본교육, 컨설팅, 간담회·워크숍 등 참여 - 성실한 근무 및 장기근로 노력

※ 3자 약정체결 : 파주시-기업-청년 간 업무약정을 통한 계속고용의무부과(정규직 등) 및 지원금 지원내역 주체별 의무규정, 청년-기업간 근로계약서 체결 후 시에 원본 제출

2 신청 및 선발방법

가. 모집자격

- 파주시내 중소기업체(법인, 단체) 및 사회적기업(법인, 단체), 협동조합 등
- 4대 보험 가입장

나. 신청기간 : 2019. 6. 10.(월) ~ 6. 21.(금)

※ 주 5일 40시간, 1일 8시간(09:00~18:00) 근무원칙

다. 신청방법 : 방문(파주시청 일자리정책과), 이메일(limsso@korea.kr)

※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(☎ 940-4555)로 "꼭" 확인

라. 제출서류(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)

- 사업참여신청서(붙임)
-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원
-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
- 신용평가등급표
-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등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인증기관발급증명서(예시 : 사회적 기업 인가 및 지정서)

마. 선발기준

- 파주시내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(법인, 단체)
- 주 40시간 근로기준에 최저임금 이상 사업장
- 4대 보험 가입사업장 ※ 워크넷 가입사업장
- 제외대상

▸ **국가 및 지자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**
▸ **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**
▸ **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**
▸ **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(1년이내)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**
▸ **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4촌 이내 친·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**
▸ **고용보험 미가입·소비향락업·세금체납·근로자 파견업체·근로자공급업체(용역업체 등)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체**
▸ **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※ 노사분규중인 사업장, 중대 산업재해 발생장 등**

※ 참여희망 기업(단체)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'기업 선발 기준 심사표' 에 준해 선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

바. 기타문의 : 파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(☎ 031-940-4555)

3 기타유의사항

가. 자격 미달 및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당연 무효처리됨

나.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다.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「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」시행지침 및 경기도, 파주시 사업방침에 따르며, 이외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상급기관과 시가 협의하여 정함

라.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
붙임1 **지역정착지원형 신청서(기업용)**

접수번호	-

사업장 개요

사업장명		사업장(법인) 관리번호	
대표자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		피보험자수	
홈페이지		이메일	
업종,업태		담당부서 (담당자)	
매출액 (선택사항)	- 2017 백만원 - 2018 백만원	고용현황 상시근로자 수 (선택사항)	- 2016 명 - 2017 명 - 2018 명
연락처	( ) -	FAX	

□ 채용조건

채용직무	□ 영업/판매/마케팅 □ IT/정보통신 □ 세무/회계 □ 생산/품질관리 □ 유통/물류 □ 엔지니어 □ 총무/인사 □ 기타( )		
학력사항	□ 졸업예정자 □ 졸업자 □ 석사이상 □ 무관	**채용인원**	명
채용형태	□ 정규직 □ 계약직 □ 파견직 □ 기타( )		
경력사항	□ 신입 □ 경력 □ 무관		
성 별	□ 남 □ 여 □ 무관	**연령제한**	
우대사항			
근무시간			
업무내용			
자격요건			
급여수준			

복리후생	중식제공	기숙사 및 주택임차료 지원	통근버스	보육시설, 차량유지비 지원	교육비, 체육활동지원
	유 / 무	유 / 무	유 / 무	유 / 무	유 / 무

운 영 계 획	
직무교육	일시 : , 장소 : , 내용 :
부서배치방법	
정규직 채용계획	

확 인 서

상기 사업장은 『**사업지침**』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확 인 사 항	사업주 확인
① 소비.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파견업체* 및 근로자 공급업체 (용역업체 포함)	유 / 무
② 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**1년 이내**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(인원적 감원) 있는 기업	유 / 무
③ 인위적 감원 등으로 1년간 채용제한기간에 있거나 정부 지원금 미반환 등으로 채용제한기간에 있는지 여부	유 / 무
④ 신청일 이전 정부일자리관련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지원금 미반환 사실이 있는지 여부	유 / 무
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 도매업 등)	유 / 무
⑥ 숙박・음식업종(호텔, 휴양콘도 제외), 공공기관, 공기업, 학교	유 / 무
⑦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	유 / 무
⑧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여부 (기재)	유 / 무
⑨ 근로기준법(근로계약서 작성, 법정휴가보장, 사회보험가입, 법정의무교육) 미준수 여부	유 / 무
⑩ 청년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과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4촌 이내의 친·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*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	유 / 무
⑪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*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**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*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**해당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·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	유 / 무

위와같이 2019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.

2019년 월 일

신청인 인

파 주 시 장 귀하

【구비서류】	**※ 상담원 기재사항**	고용보험 가입여부
- (신청시 증빙 제출서류)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, 사업체고용보험가입증명, 고용보험 완납증명원, 4대보험가입자명부, 채용신청서, 신용평가등급표,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등 - 선정결과 등 기타사유로 근로기업은 별도 선정될 수 있음		□가입 □미가입